

의안번호	제 334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19년 11월 28일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
----------	-----

발의연월일 : 2019년 11월 28일
발 의 자 : 박형용, 박상돈, 최경천,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센터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조기기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4조).
- 다.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라. 충청북도 보조기기 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7조).
- 마.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 90호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휘·감독)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재활보조기기 지원 및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비, 소요 경비 등

3. 관련조문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제4조
-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제6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 69,678천원 (매년)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지원 : 212,400천원 (매년)
-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 20,000천원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 국비 80%, 도비 14%, 시군비 6%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지원 : 국비 50%, 도비 50%
-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 도비 50%, 시군비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02,078	410,744	410,744	410,744	410,744	1,945,054
국 비		161,942	218,150	218,150	218,150	218,150	1,034,542
도 비		125,955	178,038	178,038	178,038	178,038	838,107
시군비		14,181	14,556	14,556	14,556	14,556	72,405
세 출		302,078	410,744	410,744	410,744	410,744	1,945,054
장애인재활보조기기		69,678	75,928	75,928	75,928	75,928	373,390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212,400	314,816	314,816	314,816	314,816	1,471,664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302,078	410,744	410,744	410,744	410,744	1,945,054
의존 재원	소 계	161,942	218,150	218,150	218,150	218,150	1,034,542
	보조금	161,942	218,150	218,150	218,150	218,150	1,034,542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5,955	178,038	178,038	178,038	178,038	838,107
	지방세	125,955	178,038	178,038	178,038	178,038	838,107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14,181	14,556	14,556	14,556	14,556	72,405
기 타 (민간 자부담)							